韓國知的所有權學會소식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SOCIETY (KIPS) NEWS

발행인 : 송상현 편집인 : 김용환 발행처 : 한국지적소유권 학회 738-4506 732-6336

"韓國知的所有權學會"創立

1985 년 下半期부터 大學教授와 法律實務家 그리고 知的 所有權과 관련이 있는 各界 專門家 10 여명이 본학회를 設立하기 위한 發起모임을 거듭한 바 있다. 이들은 現在 著作權 特許權 기타 工業所有權마다 그 어느 한 分野에 관한 專門的 研究를 목적으로 크게 功献하는 學會들도 많고 또한 知的 所有權과 관련되는 現業界에 종사하는 분들이 뭉쳐서 조직한 각종 利益團體的인 協會도 다수 존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韓美間의 무역마찰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특히 包括的으로 知的所有權 문제가 가장 중요한 經濟的 文化的 科學的 爭點으로 등장한 절박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단체를 발족하여 능동적이고 국제적인 사업수행은 물론 研究方法과 範圍에 있어서도 좀더 깊이 있게 立體的인 연구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의 一致를 보았다.

그리하여 知的 所有權과 관련된 創作 活動이나 實務에 종사하는 분으로써 우리나라의 未備한 現實을 걱정하고 이와 같은 趣旨의 學會를 發足할 必要性에 共感하는 여러 인사들이 1986.1.25 서울 종로구 당주동 소재 大韓辯護士會舘에 모여 韓國知的所有權學會의 創立總會를 개최하였다. 總會에서는 간단한 수정을 거쳐 會則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會長團을 選任한 뒤 任員陣 構成 기타 나머지 사항은 會長團에게 委任하였다. 또한 創立紀念으로 서울法大 黃廸仁 교수가 著作權保護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學會의 名稱에 관하여서는 韓國知的所有權法學會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학회는 法理的 研究뿐만 아니라 隣接科學分野와의 協同研究도 수행할 것이므로 韓國知的所有權學會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學會를 活性化하고 새로운 氣風을 振作한다는 뜻에서 會長의 任期를 2年 單任制로 한 것도 특기할만한 점이라고 하겠다.

(3 面에 會則 참조)

회 장 : 宋相現 (서울법대교수)

부 회 장 : 張秀吉 (변호사)

金明信 (변리 사)

李基秀 (고대법대교수)

鄭鎭勝 (KDI 연구위원)

감 사 : 崔勝民 (변호사)

총 무 : 李廷勳 (변호사)

연구이사 : 康榮洙 (변리사)

홍보이사 : 金容煥 (변호사)

재무이사 : 徐弘錫 (KIET 특허정보실장)

특허연구분과위원장 : 李基秀 (고대법대교수)

상표·의장연구분과위원장 : 康榮洙 (변리사)

저작권연구분과위원장 : 朴元淳 (변호사)

판례연구분과위원장 : 梁承泰 (서울고법판사)

국제협력분과위원장 : 張秀吉 (변호사)

제도연구분과위원장 : 鄭鎭勝 (KDI 연구위원)

이사 : 金滉植 (판사), 梁承泰 (판사), 宋永植 (변호사), 李廷玟 (교수), 高光夏 (변호사), 金平祐 (변호사), 張一男 (교수), 尹東烈 (변리사), 李永弼 (변리사), 金洞玄 (변호사), 徐弘錫 (KIET), 梁承斗 (교수), 金文煥 (교수), 朴元淳 (변호사)

학회활동일지

1986 년도

1 월 25 일 창립총회 (회칙채택 및 회장단 선출)

30 일 제 1 차 이사회 : 학회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회내에 4개 연구분과위원회와 2 개의 연구활동지원분과위원회를 두기로 결의

2 월 11 일 과학기술처의 "전자계산조직 프로그램보호법(가칭)"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 모임에 학회의 송상현 회장 및 장수길 부회장이 참석하여 그 자문에 응한 바 있음.

2 월 17 일 학회 송상현 회장 및 정진승부회장은 British Publishers' Mission 관계인사를 위한 조찬회 및 영국문회원장 주최 리셉숀에 참석하여 당면한 저작권법 개정문제, 저작권법 관계 국제회의 개최 및 장학금제공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

2 월 28 일 제 2 차 이사회
6 개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직책이사의 인선을 마무리 짓는 일방 학회의 사업계획 일환으로 1986 년 3 월 29 일에 제 1 회 학술연구발표회를 갖기로 결정 (주제는 최근 입법 예고된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관한 문제논점과 함께 저작권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결정)

3 월 7 일 이사진이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을 방문하여, 위 도서관에 본학회 사무실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이 도서관을 본학회 전속도서관으로 지정하여 학회의 각종 자료를 이 도서관에 비치하기로 결정.

학회사무실개설

당 학회는 평소 사회과학연구 및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의 李寅杓이사장님의 지원하에 李泰文도서관장님과 협의를 거쳐 아래 장소에 학회사무실을 갖게되었고, 앞으로 여러가지 자료등을 비치 활용코자 하오니 많은 성원과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사직동 304-28 (우편번호110)
한국사회과학도서관내
한국지적소유권학회 (전화 : 738-4506)

사 업 계 획

1.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의장 및 실용신안권 전반에 관한 법률적, 이론적, 제도적 연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전문적 연구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활동을 체계화한다.
   1) 특허연구분과위원회
   2) 상표 · 의장연구분과위원회
   3) 저작권연구분과위원회
   4) 판례연구분과위원회
   5) 국제협력분과위원회
   6) 제도연구분과위원회
2. 매년 정기적인 연구발표회 및 분과별 발표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국내외 저명인사의 초청강연회를 마련한다.
3. 정기적인 뉴스레타 (격월제) 와 학술지 (년1회) 를 발간한다.
4.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를 비롯한 선진각국의 저작권 및 공업소유권 연구단체들과 정보 및 자료 교환등을 비롯한 학술 및 인사교류, 인재양성과 훈련,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5.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반 입법과정에 참여 또는 건의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발전을 도모한다.
6. 각 대학에 지적소유권 강좌를 개설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안 내

제 1 회 KIPS 연구발표회

일시 : 1986. 3. 29 (토) , 14:00
장소 : 한국개발연구원 (KDI) 대회의실
주제 : 1. 저작권법상의 강제허락제도
발표자 : 朴元淳 변호사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발표자 : 宋永植 변호사
3. 저작권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표자 : 鄭鎭勝 박사
4. 저작권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
발표자 : 宋相現 교수

※ 일반인의 많은 참석을 환영합니다.

학회회칙(발췌)

※ 英文 및 日語本 會則도 준비되어 있음

第1章 總 則

第1條 (名 稱)

本會는 韓國 知的所有權學會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Society : 略稱 KIPS)라고 한다.

第2條 (目 的)

本會는 知的所有權 全般에 관한 法理的, 制度的 研究와 權利保護 및 使用에 따른 經濟的, 産業技術的, 社會文化的 分析을 통하여 知的所有權의 適正한 保護를 도모하고 이 分野의 研究體系를 樹立·發展시켜 나감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事 業)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定期的인 研究發表
(2) 뉴스레터 및 學會誌의 發刊
(3) 外國機關 및 學會와의 學術 및 情報交換
(4) 各 大學 및 研究所와의 共同研究 및 協調
(5) 政府機關이나 企業體등에 대한 學術的 建議 및 諮問
(6) 其他 本會의 目的에 附合되는 事業

第2章 會 員

第5條 (會員의 種類 및 資格)

(1) 本會의 會員의 一般會員, 團體會員, 名譽會員 및 準會員으로 한다.
(2) 一般會員은 知的所有權 分野의 研究에 積極的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3) 團體會員은 法人, 研究團體 또는 研究 補助團體로서 知的所有權의 研究에 관심을 가지고 本會의 目的과 事業에 積極 찬동하는 團體로 한다.
(4) 名譽會員은 本會의 目的과 事業에 찬동하며, 本會의 發展에 기여한 자로서 會員 3人이상의 推薦를 받아 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자로 한다.
(5) 準會員은 大學院에 在學中인 學生으로써 知的所有權 研究에 積極的인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第6條 (會員의 加入)

會員이 되고자 하는 자는 本會 所定樣式의 立會申請書를 제출하고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理事會는 會員의 加入 여부를 承認함에 있어서 申請人의 研究實績 및 本會에의 기여도등을 審査하여 이를 決定한다.

第7條 (會員의 權利)

(1) 一般會員 및 團體會員은 總會의 決議에 참여할 權利를 갖는다.
(2) 一般會員은 本會의 任員에 選出될 수 있는 被選擧權을 갖는다.
(3) 모든 會員은 本會의 會員으로서 인정되는 모든 權益을 保障받는다.

第8條 (會員의 義務)

本會의 會員은 理事會가 決定하는 바에 따라 一定한 年會費를 納付할 義務를 부담하며, 기타 本會에서 決定되는 事項을 준수할 義務를 진다.

第3章 任 員

第11條 (任 員)

本會에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會 長: 1人
副會長: 2人~5人
理 事: 30人以內 (會長·副會長 包含)
監 事: 1人~3人
總 務: 1人

第12條 (顧問 및 諮問委員)

(1) 本會에는 顧問 및 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2) 顧問 및 諮問委員은 理事會의 推薦에 의하여 會長이 推薦한다.

第13條 (任員의 選出)

(1) 會長·副會長·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2) 理事 및 總務는 會長이 總會의 認准을 받아 任命한다.

第14條 (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會長은 連任할 수 없다.

第7章 機 構

第25條 (分科委員會)

本會의 目的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각 分野別 研究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分科委員長은 理事中에서 會長이 任命한다.

第26條 (事務處)

本會의 業務處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때에는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事務處를 둘 수 있다.

韓國知的所有權學會의 發足에 부쳐

會長 宋相現(法博, 서울대法大教授)

學問이나 産業技術 또는 文化의 發展이 어느 出衆한 偉人의 功績으로 말미암아 劃期的 轉換點을 맞이한 경우도 더러는 있다. 그러나 人類가 오늘날 이만큼 높은 水準의 文明을 이룩하기까지에는 몇몇 사람의 個人的 努力보다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無數히 많은 協同研究와 蓄積된 技術과 創作에 바쳐진 智慧의 融合을 必要로 하였다. 즉 이와같은 巨大한 歷史의 오케스트라가 人類文明의 進步를 가져왔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歷史的 眞理앞에 韓國知的所有權學會는 오늘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知的 活動家를 각 분야별로 網羅하여 그들의 知的 所産을 한덩어리로 뭉치고 體系的 研究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文化藝術과 産業經濟와科學技術의 르네상스를 위하여 學問的으로 寄與하고자 1986.1.25 고고의 소리를 울리게 되었다.

우리가 사는 이時代를 잠간 반성하건대 經濟成長으로 因하여 物質的인 基盤은 마련되었으되 그 바로 뒷면에 해당하는 精神的, 文化的 狀況은 너무나도 落後와 無秩序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니 이러한 不均衡이야말로 知的 創造人들이 당면한 時代的 고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이 안고 있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 보고 특히 이 시점에서 선진외국으로부터 밀어닥치는 市場開放壓力의 主된 種目이 知的所有權이라는 認識下에 그동안 國內的으로는 이 分野에 대한 研究活動이 거의 없었고 國際的으로는 다른 통상상대국들과의 정보교환과 學術交流를 통한 協力體制를 構築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해야 했다. 韓國知的所有權學會는 이러한 認識과 반성 위에서 이 分野의 研究 또는 實務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깊은 大學教授, 辯護士, 辨理士, 自然科學者, 工學者, 文人, 音樂家, 美術家, 産業디자인전문가, 建築家, 發明家, 情報處理專門家, 判檢事나 기타 人文社會科學을 전공한 권위있는 研究陣들이 한데 뭉쳐서 出帆시킨 人材의Pool이요 Think Tank 이다.

本學會는 特許權, 著作權, 商標權, 意匠權,實用新案權 기타 無體財産權 전반에 걸친 法律的, 理論的, 制度的 研究를 중심으로 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權利의 均衡있는 保護와 利用 그리고 技術移轉問題 등에 必然的으로 수반되는 國內·國際經濟的 費用效果分析, 社會文化的 衝激分析, 産業技術的 效果分析에 관한 研究를 目的으로 삼는 純粹民間學術研究團體이다. 法理論的 研究를 遂行하는 경우에는 極히 형식적인 解釋法學의 차원에 安住하거나 外國의 立法例를 수집하여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水準을 뛰어 넘어서 隣接科學分野를 전공한 전문가와 함께 學問間協同研究를 수행하며 基礎研究와 政策建議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研究目標를 영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國內的으로는 各 大學에 知的所有權法科目에 대한 講座를 開設하도록 건의, 지원 및 협조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학회자체의 정기적 研究發表會 및 國內外 저명인사 초청강연회를 개최한 다음 그 內容을 중심으로 뉴스레터와 학술지를 발간할 것이다. 이러한 研究活動의 체계화를 위하여 特許, 著作權, 商標, 判例研究, 國際協力, 制度등 6個 研究分科委員會를 組織하여 그 組織單位를 중심으로 活動하며, 研究活動의 效率化를 위하여 「韓國社會科學圖書館」을 本學會指定 資料寄託處로 提携한 바 있다. 國際的으로는 世界知的所有權機構를 비롯한 先進各國의 著作權 및 工業所有權 연구단체들과 정보 및 資料交換과 人的資源의 訓練과 交流를 통하여 명실공히 韓國知的所有權學會가 이 分野에 관하여 韓國內에 있어서의 연구 및 情報資料의 中心處로서의 機能을 담당할 것이다. 뜻있는 분들의 加入과 물심양면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안내

지난 1986년1월30일 제1차 이사회에서 86년도 회비를 일반회원 10,000원 단체회원 50,000원 준회원 5,000원 이상으로 할 것을 결의하였읍니다.

本學會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連絡해 주시면 입회원서와 관계 參考 資料를 郵送해 드리겠으니 많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입문의연락처 : 서울 종로구 사직동 304-28
(우편번호 110)
한국사회과학도서관내
韓國知的所有權學會

전 화 연 락 처 : 학회사무실 738-4506
宋相現 회장 877-6141 交2785
李廷勳 총무 732-6336

회 비 납 부 처 : 제일은행 광화문지점
130-10-044645
한국지적소유권학회